



1 총회유지재단 보고

제103회기 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유지재단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이 사 장 이승희
상임이사 최우식

1. 조 직

- 이 사 장 : 이승희
- 상임이사 : 최우식
- 이 사 : 김종준 김종혁 진용훈 정창수 박재신 민찬기 강의창 이대봉 이영구 윤선율
최병철 지동빈 손창호
- 감 사 : 정진석

2. 회 의

1) 이사회

(1) 제1차 회의

- ☞ 일 시 : 2018. 12. 6(목) 14:0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법인 정기감사보고는 감사 정진석 장로가 보고하니 받기로 이사 최병철 장로 동의와 이사 이대봉 장로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 찬성 결의하다.
- ② 총회사무실 구조변경 및 기독교신문 임대관련 소위원회 서기 이사 최병철 장로가 보고하니 받기로 이사 진용훈 목사 동의와 이사 이영구 장로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 찬성 결의하다.
- ③ 아래 기본재산 편입신청은 심의후 승인하기로 이사 진용훈 목사 동의와 이사 박재신 목사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찬성 결의하다.

증여자(소속)	소재지	지목	면적(m ²)
경동노회 현포양문교회 김신일 목사	경북 울릉군 북면 현포리 539-1	건물	171.90
		종교용지	1007
서울강남노회 명성교회 김인환 목사	서울 관악구 봉천동 1533-28 제1층	건물	64.76
		대지 소유권	131.8 (131.8분의 43.93)

- ④ 전북신학교(이사장 유웅상 목사)에서 청원한 기본재산 처분 및 처분금 사용 신청은 심의후 이사 진용훈 목사 동의와 이사 박재신 목사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 찬성 결의하다.

※ 제101회기 제2차 유지재단 이사회의(2017.3.30.)결의 후 진행 중 변경사항 발생으로 재결의

- 기본재산 처분 부동산 표시 (토지분할 후 부분매각)

소 재 지	변경전			변경후		비고
	번 지	지 목	면적(㎡)	번지	면적(㎡)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3가	738-28	종교 용지	14,781	738-28	13,476	변동없음
				738-40	371	매매
				738-41	854	
				738-42	80	
	738-30	임야	844	738-30	655	매매
				738-43	189	
	738-31	임야	2,476	738-31	2,476	매매

- 기본재산 편입 부동산 표시

소 재 지	번 지	지 목	면적(㎡)	비 고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3가	산46-1	임야	1,190	

- 처분금 사용내역

처분금액	사용내역		비 고
	상세내역	사용금액	
629,550,000	- 위 편입부동산 구입대금	162,000,000원	
	- 전북신학교 리모델링 등	467,550,000원	
	소 계	629,550,000원	

⑤ 소래노회 수원명성교회 안중훈 목사의 기본재산 담보제공 신청은 심의후 승인하기로 이사 진용훈 목사 동의와 이사 박재신 목사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 찬성 결의하다.

-담보 부동산 표시

소재지	지목	면적(㎡)	비 고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342-14외 1필지	건물	1999.89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지하1층 지상5층 종교시설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342-14	대지	603.6	

- 대 출 금 액 : ₩1,250,000,000원 (채권최고액 : ₩1,625,000,000원)
- 대 출 금 리 : 연 4.633% (변동금리)
- 사 용 내 용 : 기 대출금 상환 및 교회운영자금(기존 개인대출상환)
- 대 출 기 간 : 대출일로부터 3년
- 대 출 은 행 : 경기남부수협 탐동지점
- 채 무 자 : 대한예수교장로회수원명성교회
- 담보 제공자 : 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유지재단

⑥ 중부노회 가남반석교회 류정열 목사의 기본재산 담보제공 연장신청은 심의후 승인하기로 이사 진용훈 목사 동의와 이사 박재신 목사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 찬성 결의하다.

- 담보 부동산 표시



소 재 지	지 목	면적(㎡)	비 고
경기 여주시 가남읍 은봉리 538-1	종교용지	292	
경기 여주시 가남읍 은봉리 538-1 제1호	건물	142.30	인슈판넬지붕 종교시설

- 최초대출일 : 2012년 8월
- 대출금액 : ₩107,900,000원 (채권최고액 : ₩182,000,000원)
- 대출금리 : 연 6.23% (변동금리)
- 대출기간 : 대출일로부터 1년 (2018년~2019년, 대출금 미상환시 연기가능)
- 사용내용 : 기존 대출금 기한연장
- 대출은행 : 서울축산업협동조합 전농지점
- 채무자 : 대한예수교장로회 가남반석교회
- 담보제공자 : 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유지재단

- ⑦ 위탁운영시설 방학동 노인복지센터의 7개시설에 대한 2018년도 추경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 승인요청에 대하여 심의후 승인하기로 이사 최병철 장로 동의와 이사 진용훈 목사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 찬성 결의하다.
- ⑧ 위탁운영시설 방학동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운영규정 개정승인 요청에 대하여 심의 후 승인하기로 하고 이사 최병철 장로 동의와 이사 진용훈 목사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 찬성 결의하다.
- ⑨ 제102회기 결산서 및 제103회기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후 승인하기로 이사 최병철 장로 동의와 이사 정창수 목사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 찬성 결의하다.
- ⑩ 결원된 임원선임 2명 중 1명은 장로로 선임하여 줄 것을 법인정관 제6조(선출), 총회규칙 제4장 13조(기관운영) 3항에 의거 총회임원회에 요청하기로 이사 윤선율 장로 동의와 이사 이대봉 장로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 찬성 결의하다.
- ⑪ 총회세계선교회에서 청원(21-GMS-0714호)은 불허하기로 이사 최병철 장로 동의와 이사 이영구 장로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 찬성 결의하다.
- ⑫ 기독교신문사 청원(54-8)은 기독교신문 임대관련 소위원회(임대계약서 포함)로 이첩하여 다음 회의에 다루기로 이사 이대봉 장로 동의와 이사 진용훈 목사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 찬성 결의하다.

(2) 제2차 회의

☞ 일 시 : 2019. 1. 28(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총회본부 재무과 2억원 대여금 상환보고에 대하여 상임이사 최우식 목사가 보고하니 받기로 결의하다.
- ② 기본재산 편입신청은 심의 후 승인하기로 이사 최병철 장로 동의와 이사 강의창 장로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 찬성 결의하다.

증여자(소속)	소재지	지목	면적(㎡)	비고	
충북동노회 새제천교회 정태영 목사	충북 제천시 하소동 93-2 (하소로29)	건물	823.655	예배당	
		종교용지	606		
	충북 제천시 하소동 131-1 (하소로27)	건물	37.13	상당실	
		대지	207		
충북 제천시 하소동 175-22	종교용지	662	주차장		
충북 제천시 하소동 176	종교용지	25			
황서노회 천안성실교회 서재철 목사	충남 천안시 삼용동 346외 2필지 (346, 344, 346-2번지)	건물	2,202.13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슬래브지붕 3층 문화 및 집회시설 지층식당 267.34㎡ 1층 종교시설, 주택 794.67㎡ 2층 종교시설 806.03㎡ 3층 종교시설 334.09㎡	
		충남 천안시 동남구 삼용동 344	종교용지	1,894	
		충남 천안시 동남구 삼용동 346	종교용지	1,696	
		충남 천안시 동남구 삼용동 346-2	종교용지	661	
		충남 천안시 동남구 삼용동 344-1	도로	364	
	충남 천안시 동남구 삼용동 346-4	도로	266		

- ③ 수원노회 와~우리교회 박만규 목사의 기본재산 담보신탁 해지 및 담보제공 신청은 심의후 승인하기로 이사 최병철 장로 동의와 이사 정창수 목사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 찬성 결의하다.
- 담보신탁 해지 : 아래 부동산은 본 법인이 위탁자로 2010년 3월 29일 수협은행 인계동 지점에서 교회대출 차입을 위해 동 부동산을 담보신탁으로 등기하였으나, 금차 부동산 담보신탁을 해지 후 근저당설정 전환
 - 대출 사유 : 부동산 담보신탁 해지 후 근저당설정 전환을 위한 기대출 포함 및 신규대출(타 금융권 대환대출)
 - 담보 부동산 표시

소재지	지 목	면적(㎡)	비 고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197	종교용지	995	
	건물	1,495.16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3층 문화 및 집회시설 지하1층 549.14㎡, 1층 445.34㎡, 2층 172.34㎡, 3층 328.34㎡



- 사용내용

No.	대출금액(원)	약정일	만기일	비고
1	2,708,290,000	2010.3.29	2025.3.29	기대출
2	2,041,620,000	2010.9.15	2025.9.15	기대출
3	2,000,000,000	2011.6.30	2026.6.30	기대출
4	2,170,000,000	취급일로부터 10년 원금분할상환		신 규
소계	8,919,910,000			

- 대출금액 : ₩ 8,919,910,000원
- 채권 최고액 : ₩10,703,892,000원
- 대출금리 : 3.5%/년
- 대출기간 : 대출일로부터 10년 (원금분할상환)
- 사용내용 : 부동산 담보신탁 해지 후 근저당설정 전환을 위한 기대출 포함 및 신규 대출 (타금융권 대환대출)
- 대출은행 : 수협은행 인계동지점
- 채무자 : 대한예수교장로회 와~우리교회
- 연대보증인 : 대한예수교장로회 와~우리교회 담임목사 박만규
- 담보제공자 : 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유지재단

- ④ 본 법인 정관개정 필요 (총회신학원 관련)에 대하여 이사장 이승희 목사가 설명후 현재 정관 제4조 사업 ③기독교교육과 신학교육에 "평생교육원 총회신학원 시설 설치 및 운영"삽입하기로 결의하고 이와 관련하여 정관 제33조(정관변경)에 의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승인은 개정한 후 104회 총회시 보고, 승인을 받기로 하다. 관련교육기관을 설치 운영하기로 하며 이를 위한 행정비(허가조건에 따른 비용)는 본 법인에서 부담하기로 이사 최병철 장로 동의와 이사 정창수 목사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 찬성 결의하다.
- ⑤ 본 법인 103회 1차 이사회 결의에 의거 이사선임은 정관 제5조(임원), 제6조(임원의 선임)에 의거 이사 장재덕 목사 代 손창호 장로, 이사 김재호 목사 代 지동빈 장로를 이사 선임하기로 이사 이영구 장로 동의와 이사 강의창 장로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결의하다.
- ⑥ 총회회관 용역비(최저임금 상승)인상 요청 및 건물내(7층~9층)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에 대하여 실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고 기존 소위원회(총회사무실 구조 및 기독교신문관련)에 위임하여 진행하기로 이사 이영구 장로 동의와 이사 진용훈 목사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결의하다.

- 정 회 : 위 결의사항 중 ④번 결의승인을 위하여 정회하기로 결의하다. 속회는 2019년1월 29일 오후4시 인천공항 회의실에서 하기로 이사 이영구 장로 동의와 이사 강의창 장로의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결의하다.
- 속 회 : 2019년 1월 29일(화요일) 오후 4시, 인천공항 회의실에서 속회하다.

- ① 속회 후 다시 심의하기로 한 법인정관개정(총회신학원관련)에 대하여 이사 김종혁 목사 동의와 이사 진용훈 목사의 재청으로 개정안에 대하여 이사장이 안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거수로 표명하고자 하니 참석이사 전원 찬성 결의하다.

현행	개정(안)	비고
제4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총회 및 노회와 지교회의 자산을 보호, 관리 ② 국내전도와 해외선교 ③ 기독교교육과 신학교육 ④ 자선사업과 구제 ⑤ 기독교신문 및 출판물 발행 ⑥ 사회복지사업 ⑦ 영유아 보육 사업	제4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총회 및 노회와 지교회의 자산을 보호, 관리 ② 국내전도와 해외선교 ③ 기독교교육과 신학교육(평생교육원 총회신학원 시설 설치 및 운영) ④ 자선사업과 구제 ⑤ 기독교신문 및 출판물 발행 ⑥ 사회복지사업 ⑦ 영유아 보육 사업	수정

(3) 제3차 회의

☞ 일 시 : 2019. 5. 13(월) 11:30

☞ 장 소 : 광주겨자씨교회당 회의실

☞ 결의사항

- ① 법인 중간감사보고는 감사 정진석 장로가 보고하니 받기로 이사 강의창 동의와 이사 이대봉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 찬성 결의하다.
- ② 기본재산처분(일부)에 대하여 심의 후 승인하기로 이사 강의창 동의와 이사 최병철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 찬성 결의하다.
 - 소 속 : 경안노회 청송읍교회 조상식 목사
 - 처분사유 : 청송읍 도로개량공사로 인한 편입에 따른 기본재산 처분(일부)
 - 부동산 표시

소재지	지 목	면적(㎡)	비 고
경북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산43-1	임야	760	본번 청송읍 부곡리 산43(전체면적 46,453㎡)에서 43-1로 분할등기 후 해 부동산 처분

- ③ 기본재산 담보제공 및 연장신청에 대하여 심의 후 승인하기로 이사 김종혁 동의와 이사 이영구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 찬성 결의하다.

1) 담보제공 신청

- 소 속 : 강원노회 원주중앙교회
- 대출 사유 : 교육관, 식당 및 주차장 건축비 마련
- 부동산 표시

소재지	지목	면적(㎡)	비 고
강원 원주시 학성동 302-22	대지	103.5	교회명의 부동산 포함

- 대출 금액 : 금이십억원정(W2,000,000,000)
- 대출 금 리 : 연4.2%(변동금리)
- 대출 기 간 : 대출일로부터 15년 (분할상환)
- 대출 은 행 : 농협은행 판부지점
- 채 무 자 : 대한예수교장로회원주중앙교회



- 담보 제공자 : 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유지재단

2) 담보제공 연장신청

- 소 속 : 동대전노회 에덴교회 류철식 목사
- 담보 부동산 표시

소 재 지	지목	면적(㎡)	비 고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연서로 130-1	대지	980	
	건물	196.80	보육시설
		35.38	
		56.56	
	133	종교집회장	
50.34(1층) 47.61(2층)	소예배실		

- 최초대출일 : 2005년 10월
- 대 출 금 액 : 금이역사천육백오십만원정(W246,500,000)
- 대 출 금 리 : 연 4.2%(고정금리)
- 대 출 기 간 : 대출일로부터 2년
- 사 용 내 용 : 기존 대출금 기한연장
- 대 출 은 행 : 세종중앙신용협동조합
- 채 무 자 : 대한예수교장로회 에덴교회
- 담보제공자 : 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유지재단

- ④ 위탁운영시설 2018년도 추경예산 및 2019년도 결산 및 2019년도 예산 및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의 후 승인하기로 이사 이대봉 동의와 이사 윤선율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 찬성 결의하다.
- ⑤ 본 법인정관 개정에 대하여 상임이사와 전도법인국장의 설명을 듣고 개정하기로 이사 최병철 동의와 이사 김종준 재청하니 이사장이 안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거수로 표명하고자 하니 참석이사 전원 찬성 결의하다. 또한, 정관 제33조(정관변경)에 의거 총회규칙부에 심의를 요청하기로 하다.

현 행	개 정 (안)	비 고	개정사유
제4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총회 및 노회와 지교회의 자산을 보호, 관리 ② 국내전도와 해외선교 ③ 기독교교육과 신학교육(평생교육원 총회신학원 시설설치 및 운영) ④ 자선사업과 구제 ⑤ 기독교신문 및 출판물 발행 ⑥ 사회복지사업 ⑦ 영유아 보육 사업	제4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총회 및 노회와 지교회의 자산을 보호, 관리 ② 국내전도와 해외선교 ③ <u>기독교교육과 신학교육, 평생교육</u> ④ 자선사업과 구제 ⑤ 기독교신문 및 출판물 발행 ⑥ 사회복지사업 ⑦ 영유아 보육 사업 ⑧ <u>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u>	수 정 신 설	사업주체 및 해당 조항을 구체적 명시하고 평생교육 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⑥ 위 ⑤항 결의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을 허락하고 평생교육시설의 본 법인일부시설

에 대한 무상임대를 승인하기로 이사 최병철 동의와 이사 김종준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 찬성 결의하다.

- ⑦ 총회회관 옥상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실무국장의 보고를 듣고 기존 소위원회(총회사무실 구조 및 기독교신문관련)에 위임하여 공사를 진행하기로 이사 정창수 동의와 이사 이대봉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결의하다.
- ⑧ 임기만료된 감사 윤중근 장로에 대하여 총회임원회에 추천받기로 이사 최병철 동의와 이사 윤선울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결의하다.
- ⑨ 총회회관 건물과 관련하여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 은급재단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연석회의를 진행하기로 이사 최병철 동의와 이사 김종혁 재청 후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결의하다.

2) 소위원회 (총회사무실 구조변경 / 옥상보수공사 및 기독교신문 임대관련)

(1) 제1차 회의

☞ 일 시 : 2019. 2. 28(목) 10:4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총회회관용역비(최저임금상승분적용)인상요청 건은 심의결과 조정2안(현근무시간적용)으로 결의하다. 단, 인상분이 인건비로 적용유무에 대하여 실무책임자가 확인하기로 결의하다.
- ② 총회회관(7~9층)환경개선공사비에 대하여 심의하고 상임이사와 실무자에게 맡겨 진행하기로 결의하다.
- ③ 기독교신문 임대관련 미수금 정산과 재정청원에 대하여는 추후 다루기로 하다.

(2) 제2차 회의

☞ 일 시 : 2019. 6. 11(화)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제103회기 제3차 이사회 결의에 의거, 총회회관 옥상보수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여 붙임서류와 같이 2019년 6월 18일(화) 기독교신문에 입찰 공고하기로 하다.
- ② 기독교신문 임대관련 미수금정산에 관련하여 차기 회의시 다루기로 하다.
- ③ 차기 회의는 2019년 7월 5일(금) 오전11시, 총회회관에서 갖기로 하다.

(3) 제3차 회의

☞ 일 시 : 2019. 7. 5(금)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유지재단 소위원회 명칭을 기존 명칭(총회사무실 구조변경 및 기독교신문 임대관련)에서 다음과 같이 변경하다. (변경명칭 : 총회사무실 구조변경/옥상보수공사 및 기독교신문 임대관련 소위원회)
- ② 총회회관 옥상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접수된 2개 업체(봉인확인)를 개봉한 결과 아래와 같음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에 어떤 제품을 사용하여 견적을 산출하였는지 제출받아 차기 회의시 재 논의하기로 하다.



업체명	건적금액	비고
청수종합개발(주)	48,442,311원	
민우건설(주)	58,300,000원	

- ③ 기독교신문 임대관련 미수금정산에 관련하여 2014년 6월부터 2019년 6월말 현재까지 임대료 미수금 납부를 내용증명으로 독촉하기로 하고 납부하지 않을시 상응하는 조치를하기로 하다.
- ④ 차기 회의는 2019년 7월 22일(월) 오후 1시, 총회회관에서 갖기로 하다.

3.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체 현황

번호	명칭	주소	소속		시설장	관할청
			노회명	교회명		
1	방학동노인복지센터 (부설 공동생활가정)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 15라길 59-9	합남	문창 김종철	김종철	도봉구청
2	수진1동복지회관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 17번길 6	평양 제일	성현 김선규	이정하	성남시청
3	방학동지역아동센터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 88 성원프라자 3층	합남	문창 김종철	박상진	도봉구청
4	시선비전스쿨 지역아동센터	충남 서천군 마산면 신봉시선로 134	충청	시선 김중철	안금란	서천군청
5	대성어린이집	광주 남구 회서로 51	광주	광주청산 김중현	봉성희	광주남구청
6	동면어린이집	강원 양구군 동면 금강산로 1557-14	강원	동면 김철환	박현숙	양구군청
7	단산어린이집(휴원)	경북 영주시 단산면 보옥로364번길 13	안주	모산	황성혜	영주시청
8	사랑어린이집	전북 진안군 진안읍 대평이길 40-57	동전주	사랑의 최종환	이정옥	진안군청
9	제일어린이집	강원 영월군 영월읍 은행나무3길 40	강동	영월제일 김영식	김소연	영월군청
10	시흥5동어린이집	서울 금천구 독산로10길 24	합남	엘림 임병철	김봉아	금천구청
11	수진동어린이집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 17번길 6	평양 제일	성현 김선규	안진영	성남시청
12	김제사회복지관	전북 김제시 요촌북로 110	김제	김제노회	김준수	김제시청
13	장흥종합사회복지관	전남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37-24	목포	장흥효성 임성곤	김영석	장흥군청
14	시흥5동청소년독서실	서울 금천구 독산로10길 24	합남	엘림 임병철	김부순	금천구청
15	장흥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남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37-24	목포	장흥효성 임성곤	박혜영	장흥군청

첨 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유지재단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유지재단(이하 본 법인)이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 법인의 본부는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단,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법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 및 동 총회에 속한 노회와 교회가 전도, 선교, 언론, 출판 및 자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과 설비품을 관리하며 또한 이에 필요한 자산을 증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① 총회 및 노회와 지교회의 자산을 보호, 관리
- ② 국내전도와 해외선교
- ③ 기독교교육과 신학교육, 평생교육
- ④ 자선사업과 구제
- ⑤ 기독교신문 및 출판물 발행
- ⑥ 사회복지사업
- ⑦ 영유아 보육 사업
- ⑧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제2장 임 원

제5조(임원)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이 사 장 1인 (총회장 당연직)
- ② 상임이사 1인 (총무 당연직)
- ③ 이 사 15인 이내 (이사장 및 상임이사 포함, 목사부총회장, 장로부총회장, 총회서기, 총회 회록서기, 총회회계, 총회부회계, 일반이사 7인)
- ④ 감 사 2인

제6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 소속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총회규칙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취임하고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 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에 보고한다. (단, 본 재단에 특별한 공이 있는 자는 권사라도 선출할 수 있다.)

제7조(이사장)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며 본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이사장직무대행) 이사장이 유고 및 궐위가 있을 때는 이사회 결의로 선임된 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상임이사)

- ①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한다.
-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준수하며 사무국 운영 전반을 관리 감독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함과 동시에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② 감사는 본 법인의 회계 및 사무 상황 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며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산상황이나 업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③ 이사 및 감사는 재임시 업무상 취득한 내용을 이사회 결의 없이 외부로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임기) 본 법인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① 이 사 장 1년
- ② 상임이사 3년(단, 1회 연임 할 수 있다.)
- ③ 이 사
 - 1.총회 임원 : 1년
 - 2.그외 이사 : 3년
- ④ 감 사 2년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 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에 보고 한다.

- ①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②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③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④ 임원으로서 직무를 태만하거나 그 품위를 오손하는 행위
- ⑤ 심의하지 않는 업무를 공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자격상실) 임원이 사임서를 본회사 사무국에 제출할 때에는 즉시 자격이 상실된다.

제14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해서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정의 여비와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3장 이 사 회

제15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제16조(이사회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회계년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 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이사회 개최를 요구할 시 이사장은 이를 소집한다.
- ④ 이사회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임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시는 예외로 하며 이사회에서 결의할 사항은 먼저 유선으로 임원에게 통지한다.

제1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0조 ②항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②항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제8조 규정대로 한다.

제18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사업계획

② 예산 및 결산

③ 정관변경, 법인해산

④ 임원선출, 해임

⑤ 재산의 취득, 처분, 기채

⑥ 기타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9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한다.

② 이사회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0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 취임 또는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1조(서면결의금지) 이사는 서면 결의를 할 수 없다.

제4장 재 정(자산 및 회계)

제22조(재산)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① 기본재산은 본 법인의 설립시에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3조(사용) 법인의 재산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 헌법과 성경에 위반되는 교리를 선포하거나 정치, 예배모범, 권징조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사용시킬 수 없다.

제24조(기본재산처분) 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매도, 증여,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33조(정관변경)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경비) 법인의 경비는 기본자산의 수입, 기부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특히 조건을 기부한 기부재산의 사용은 조건에 따른다.

제26조(결산잔액) 매년도 결산 잔액은 다음 년도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3조(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27조(관리) 기본재산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이를 관리한다.

제28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9월 1일부터 익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장 사무국

제29조(설치)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30조(직원) 사무국에 국장 1인과 직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제31조(사무국장 등)

- ① 사무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 규칙과 업무규정에 따른다.
- ②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법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사무국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6장 보 칙

제32조(법인해산) 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의 승인을 얻은 후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 결의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의 승인을 얻은 후 총회산하의 기관이나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33조(정관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에서 승인을 얻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법인 등기에 관련된 사항은 법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1981년 11월	제정
1983년 2월 19일	개정
1986년 11월 27일	개정
1990년 12월 3일	개정
1992년 12월 23일	개정
2000년 9월 29일	개정
2009년 6월 22일	개정
2015년 6월 4일	개정
2018년 11월 29일	개정
2019년 3월 19일	개정
2019년 6월 19일	개정

제3조(설립 당초의 임원)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설립자〉

이사장	이 영 수	대전시 은행동 132
이 사	정 태 성	부산시 남구 우암동 7-2
	백 남 조	부산시 진구 양정동 400-7
	한 석 지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19-2
	최 성 원	전북 전주시 중앙동 4가 58
	박 성 만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23-613
	홍 태 우	인천시 동구 송림동 69
	배 태 준	대구시 동구 신암동 597-1
	김 기 정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1-18
감 사	김 동 권	경남 진주시 봉래동 38
	김 원 범	전남 목포시 산정1동 37